

## 2026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제2차 지원계획 공고

『2026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』의 제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테크노파크 및 참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공고는 중소기업(참여기업)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TP 컨소시엄 모집 공고이며, 참여 중소기업 모집은 5월 중 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

2026년 4월 10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지역 테크노파크와 대학·연구소가 가진 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지역 주력산업분야 등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

#### □ 지원내용

- 지역 주력산업 전·후방 중소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장비 공동활용, R&D 과제 기획 등 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
  - TP와 대학·연구소가 해당 분야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묶음예산 방식(Block-Funding)으로 사업 추진

지원기간	국비 지원한도	국비 비중	선정규모
6개월 (2026. 7. 1. ~ 12. 31.)	TP 컨소시엄 당 최대 10.5억원 이내	52.5% 이내	2개 TP 컨소시엄

\* 상기 국비 비중은 지자체 부담금(지방비) 및 민간부담금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2.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

□ 지원규모 : '26년 국비 21억원(총 2개 컨소시엄)

\* TP 컨소시엄별 총 사업비는 선정 결과, 지방비 매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
□ 지원기간 : '26. 7. 1. ~ 12. 31.(6개월)

□ 신청자격

○ (컨소시엄) 지역 테크노파크(주관기관)와 대학·연구소(운영 참여기관) 간 1:1 컨소시엄(이하 “TP 컨소시엄”)으로만 신청 가능

- (주관기관) 「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의 사업시행자 중 비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 소재 테크노파크

- (운영 참여기관) 중소기업에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소로 주관기관과 동일 권역\* 또는 수도권에 소재

\* 본 사업에서 권역은 5극3특을 기준으로 ① 수도권, ② 충청권, ③ 호남권 + 제주, ④ 대구·경북권 + 강원, ⑤ 동남권으로 구분

### 운영 참여기관 (대학, 연구소) 범위

□ 대학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
- 다음 법률 중 하나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원
  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
  -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
  -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
  -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

□ 연구소
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2조에 해당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※ 대학·연구소 산하 산학협력단, 기술지주회사 등은 해당 대학·연구소와 동일 기관으로 간주

**< TP 컨소시엄 구성 예시 >**

신청가능(O)	신청불가(X)		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 align="center"><b>TP 컨소시엄 A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align="center">주관기관 A테크노파크[충청]</td> <td align="center">운영 참여기관 B대학[대전]</td> </tr> </table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 align="center"><b>TP 컨소시엄 B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align="center">주관기관 C테크노파크[호남]</td> <td align="center">운영 참여기관 D연구소[경기]</td> </tr> </table> </div>	주관기관 A테크노파크[충청]	운영 참여기관 B대학[대전]	주관기관 C테크노파크[호남]	운영 참여기관 D연구소[경기]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 align="center"><b>TP 컨소시엄 C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align="center">주관기관 A테크노파크[충청]</td> <td align="center">운영 참여기관 B연구소[호남]</td> </tr> </table> </div> <p>* 주관기관과 운영 참여기관이 동일 권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(수도권 제외)</p>	주관기관 A테크노파크[충청]	운영 참여기관 B연구소[호남]
주관기관 A테크노파크[충청]	운영 참여기관 B대학[대전]						
주관기관 C테크노파크[호남]	운영 참여기관 D연구소[경기]						
주관기관 A테크노파크[충청]	운영 참여기관 B연구소[호남]						

□ TP 컨소시엄 운영 계획 및 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

※ 컨소시엄 신청 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

- (컨소시엄 운영) 참여기업\* 모집·관리, 주관/운영 참여기관 간 사업비 배분·활용, 성과관리 등에 관한 계획 수립

\* TP 컨소시엄 당 25개사 ~ 35개사 범위의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 필수

- 단, 필요시 참여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이 추천하거나 직접 모집하는 방향으로 기획 가능

- (프로그램 구성) 각 기관의 여건과 테마 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 공동활용, 기술자문 등 세부 프로그램을 자율 기획

- (테마 기술분야) 지역 주력산업 분야 및 해당 주력산업의 전·후방 연관 분야를 기준으로 TP 컨소시엄의 특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

- (프로그램 범위)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, 장비 활용부터 중소기업의 사업화 R&D과제 기획으로 연결되는 협력 프로그램 제시

**< 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예시 >**

구분	내용
<b>장비 공동활용</b>	▶ TP 컨소시엄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, 공정개선, 성능검증 등 진행
<b>시험·인증</b>	▶ 시험성적서 발급, 성능·신뢰성 평가, 국내외 인증 관련 시험·검증 지원
<b>기술자문</b>	▶ 대학·연구소 전문가의 기술애로 진단, 설계·공정 개선 자문 제공
<b>R&amp;D 과제 기획</b>	▶ 장비 활용과 자문 결과를 토대로 R&D 과제를 도출하고 PoC 수행
<b>특화 프로그램</b>	▶ TP 컨소시엄의 전문성을 반영한 별도 제안 프로그램 등

\*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, 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TP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구성

## □ 사업비 구성

○ (총사업비) 총 20억원 이상

총 사업비	국비	지방비 <sup>1)</sup>	민간부담금 <sup>2) 3)</sup>
20억원 이상	10억 5,000만원	4억 5,000만원	5억원 이상

- 1) 지방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테크노파크의 현물납부로 대체 가능  
(단, 지방재정 출연 비중은 선정평가 시 반영하여 우대)
- 2) TP 컨소시엄이 운영할 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운영 참여 기관(대학·연구소)이 분담
- 3)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

○ (편성 기준)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

－ (비목)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인건비, 연구활동비(전문가 활용비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, 자문료, 행사추진비 등), 간접비 등 계상

－ (현금·현물) 연구시설·장비비\* 및 연구수당은 현금계상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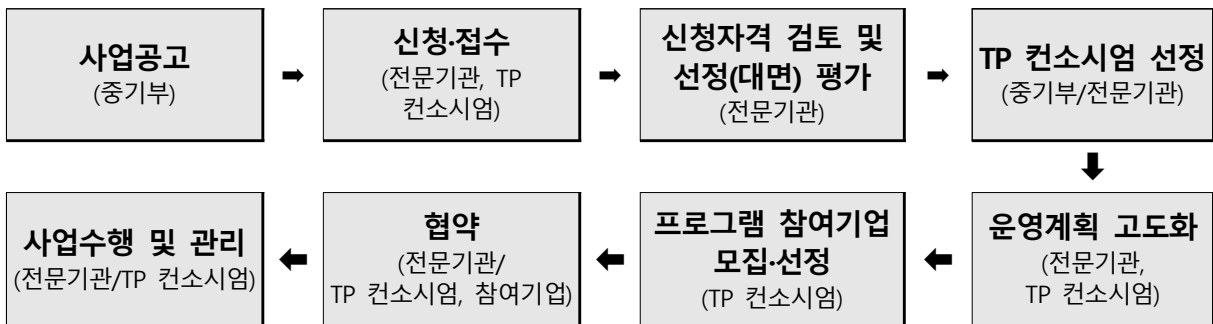
\* TP 현물부담이 있는 경우 동 사업에 직접 활용되는 보유장비는 현물 계상 가능

※ 향후 운영계획서 고도화 단계에서 조정 가능

## 3. 추진절차 및 선정평가

### □ 추진절차

☞ 평가, 선정,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

※ 전문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□ 선정평가

- (방식)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기반으로 컨소시엄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·응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 - 관련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
- (기준) 평가결과 상위 2개 TP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되, 주관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안배 추진
  - 동일 권역 내 다수의 TP 컨소시엄이 지원한 경우 초광역권을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하나의 TP 컨소시엄만 선정

< TP 컨소시엄 선정기준 >

구분	내용	배점
컨소시엄 구성 기관의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컨소시엄 구성(전담조직 및 인력 등)의 적절성</li> <li>▸ 기술협력 프로그램 운영 실적<sup>1)</sup> 및 성과창출 사례 등</li> </ul>	30
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프로그램 기획·설계의 구체성 및 적정성</li> <li>▸ 사업추진(일정, 예산, 성과 등) 체계의 적절성</li> <li>▸ 참여기업 규모·모집 계획의 적절성<sup>2)</sup></li> </ul>	20
R&D기획 및 기술지원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기술기획 전문성(기술로드맵 수립, 과제기획 경험<sup>3)</sup> 등)</li> <li>▸ 산·학·연 등 내·외부 기술전문가 Pool 보유 수준</li> <li>▸ 인프라(기술, 장비, 인력 등) 역량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</li> </ul>	20
성과관리 및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성과목표(지표)의 우수성 및 달성가능성</li> <li>▸ 성과관리·확산 계획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</li> </ul>	15
사업비 구성 및 활용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총사업비 구성계획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<sup>4)</sup></li> </ul>	15
<b>합계</b>		100

- 1) TP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학·연구소가 '23년 이후 운영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중소기업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상시 참여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인 경우를 의미
- 2) 참여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모집하여 배정하더라도 평가상 영향 없음
- 3) ▲ 중소기업의 사업화 R&D 과제 기획을 직접 지원한 경우와 ▲ 기획된 과제에 대한 PoC를 수행한 경우를 포함
- 4) 지방재정 출연금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평가  
(프로그램 내 세부 활동별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 계획 등은 TP 컨소시엄 선정 후 고도화 예정)

#### 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·접수기간 : `26. 4. 10.(금) ~ 5. 11.(월) 18:00까지

○ 신청기간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보완 및 교체 불가

※ 단, 전문기관이 신청자격 검토 등을 위해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

□ 신청방법 :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접수

○ 신청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에 따른 열람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“PDF 형식”으로 변환하여 제출

\* 단, 세부 실적 증빙은 엑셀파일 그대로 제출

☞ 접수 이메일 주소 : **rnd14@tipa.or.kr**

☞ 신청시 메일 제목 앞단에 **[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제2차 지원사업 신청]** 기재 요망

☞ 접수완료시 담당자가 확인 메일을 회신드릴 예정이오니, 미회신 시 반드시 유선 연락 요망(044-300-0652, 0658)

□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, [붙임] 참조

연번	서식명	비고
1	TP 컨소시엄 신청서	필수
2	TP 컨소시엄 운영계획서	필수
3	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 실적 세부내용(엑셀)	필수
4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필수
5	사업 수행 서약서	필수
6	개인(기관)정보 활용동의서	필수
7	지방비 현금 부담 동의서	해당 시

## 5.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서, 운영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, 선정 및 협약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(기업)은 동 사업의 TP 컨소시엄 구성원(기술전문가 Pool 포함)으로 신청 불가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

## 6. 향후 일정

※ 내부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- 선정(대면) 평가 : '26. 5월 3~4주
- 선정결과 확정 : '26. 5월 4주
- 참여기업 모집 : ~ '26. 6월 3주
- 협약 : ~ '26. 6월 말
- 사업수행 : '26. 7월 ~ 12월

## 7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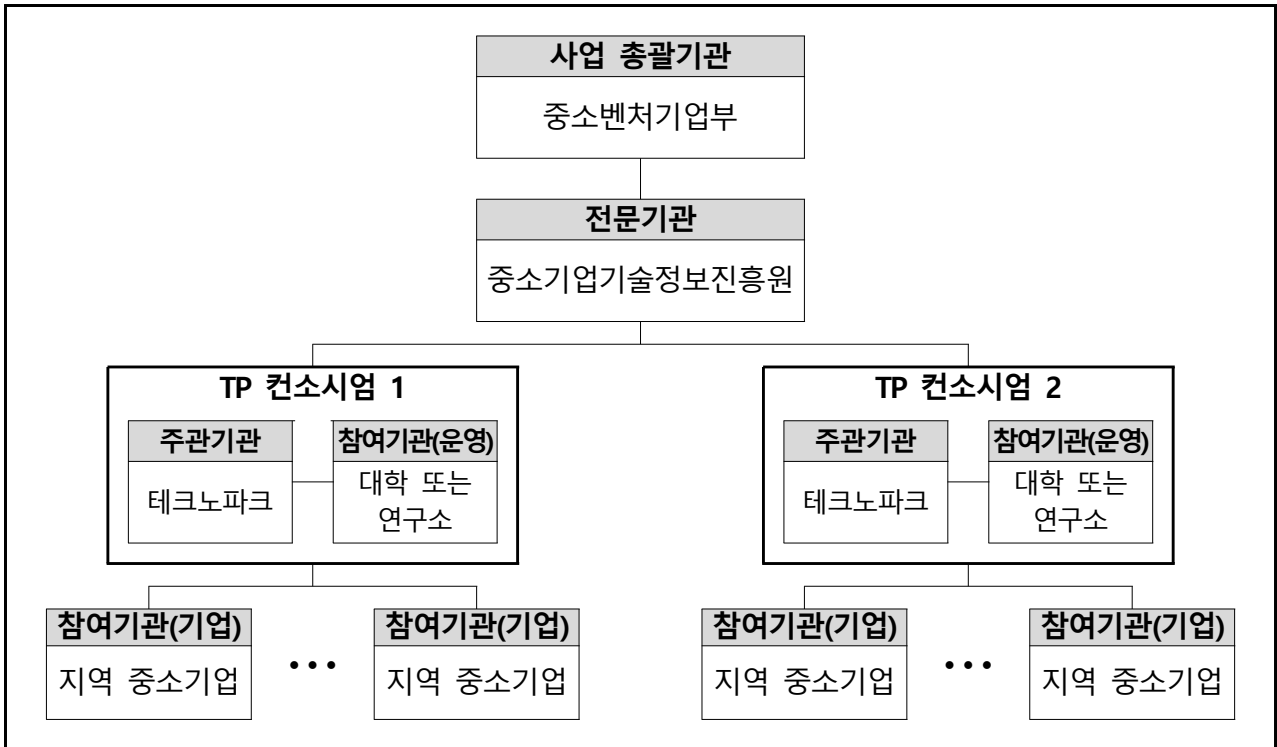
-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\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
-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
-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
□ 추진체계



8.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	시행계획 공고	044-204-7764, 7767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기술상용화사업실)	신청·접수, 운영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	044-300-0652, 0658